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47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백선희 · 황운하 · 정춘생  
권향엽 · 이주희 · 김재원  
이해민 · 서왕진 · 차규근  
박지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9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매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자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권고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최대 1년의 범

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모교육 이수 및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